

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목적 및 경위

1. 개정 목적 및 경위

예산안 비율을 결정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,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.

2.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5조(예산안 비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,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<u>준용한다.</u> 2.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<u>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u> 3.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<u>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.</u> | <p>제15조(예산안 비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,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<u>적용한다.</u> 2.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<u>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u> 3.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<u>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.</u> |
| <p>목적 및 경위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확한 표현 사용 가. '준용'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, '적용'은 특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함. 나. 상위 의결기구인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대항목 비율은 수정할 수 없고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'적용'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됨. 2. 경직된 예산안 심의 개편 가. 현행 규정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'매 반기 초'라는 제약을 규정하여 예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집행조정위원회, 기층예산심의회의, 중앙운영위원회 등이 사전에 진행될 수 없도록 함. 나. 이를 개정하여 시기적 제약을 해소하고, 무조건 반기 시작 이후에만 예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집행조정위원회, 기층예산심의회의, 중앙운영위원회 등이 |

진행되는 것이 아닌, 사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개편하고자 함.

3. 권한과 역할의 정립

집행조정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지만, 학생회칙 및 세칙·규칙에서 위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별 규정에서 이를 정립하여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.